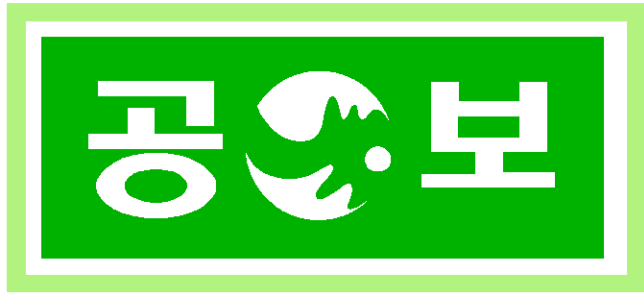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구 관	기 관 의 장



제 737 호 2012. 1. 30(월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-12호[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]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-13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4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-79호[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]6
-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2-1호[울산북구의회전자이미지공인공고]7

회 관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기획홍보실(☎219-7207 행정7207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-12호

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1월 30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23길 14 외 3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(☎052-219-7283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2. 1. 30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·명촌지구 2B 14L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23길 4	2004-12-27	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중은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 부여	
2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·명촌지구 18B 1L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3길 10	2004-12-27	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중은 명칭이므로 도로명 부여	
3	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농 300	울산광역시 북구 바깥시례길 26-3	2004-08-09	기존 자연마을인 바깥시례 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	
4	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38-1	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19b-6	2009-08-20	이 지역의 지형에 따라 도로명 부여	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2-13호

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1월 30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약수8길 42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 (별지참조)	폐지 사유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청 민원지적과 (☎052-219-7283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q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2. 1. 30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부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.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약수8길 42	울산광역시 북구 종신통 1009	2012. 1.30	건물멸실	

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 2012 79호

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

「공직선거법」 (제60조의3제3항)·(제111조제3항)의 규정에 따라
세대주 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일반명단 해당 작성비용		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(광학식디스크(CD-RW))	비고
일반용지	라벨용지		
추출범위수×49.67원/매 (A4용지)	추출범위수×185.32원/매 (A4라벨용지)	(990원×디스크개수)+ (추출범위수×23원×면수)	

2012년 1월 31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2- 1호

공 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공인 조례」 제5조에 의거 등록된 공인을 「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공인 조례」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1월 16일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의



- 신규공인 최초사용 가능일 : 2012년 1월 16일
- 등록 전자이미지 공인

공 인 명	규격(cm)	서 체	인 영
(e세출시스템용) 울산광역시북구의회지출원인	2 × 2	한글전서체	